

예 산 총 칙

2010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1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332,929,686	9,987,891
일반회계	287,352,738	8,620,582
특별회계	45,576,948	1,367,308
기타특별회계	45,576,948	1,367,308
상수도사업	1,709,339	51,280
하수도사업	1,295,828	38,875
수질개선	9,635,199	289,056
자활 및 생활안정기금	473,316	14,199
의료급여기금	520,420	15,613
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	788,079	23,642
소득특화사업	7,143,530	214,306
농공단지조성사업	2,502,489	75,075
공영개발사업	11,064,749	331,942
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	10,443,999	313,320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,444,360천원으로 하며, 예비비의 40%는 재해대책비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

제 4 조 2010년도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6,5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1.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
2.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